

의안 번호	2274	【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】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5. 30.(목)
- 제출자 : 김도운 의원 외 9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30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6. 11.(화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김도운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홀로사는 노인의 병원 방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내용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수행기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동학)

- 최근 우리사회가 초고령화와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고 특히, 노인 인구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및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, 고독사 증가 등 점차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음.
-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확인, 생활교육, 사회참여,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노인맞춤 돌보서비스 제공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병원동행서비스를 통해 홀로사는 노인들의 병원방문에 따른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노인복지법」

-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24.>
-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##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- 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- ② 국가는 흡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인전에 흡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